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9호 2020. 9. 28.(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공 고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7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3
-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69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5

회람

목포시 고시 제 2020-26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311번길 6	2020.9.28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고시 제 2020-27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월산로51번길 30	2020.9.28.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공고 제 2020 - 1470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2020. 1. 15.)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상위법 필수조례 정비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 위임 사항을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가. 1항 :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개정사항 반영

⇒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존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확대 : 기존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가족

※ 직계혈족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

나. 3항 : 조문 변경

⇒ 영 “제8조제5항” 을 “제8조제6항” 으로 조문변경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나열된 조문 정비 (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중 지방세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으로 이관(2020.1.15.)됨에 따라 개정 조항 반영
- 상위법에 중복나열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 개정사항			조례개정(안) 감면기간/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변경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변경후)	감면기간/감면율 (변동없음)	
안)제6조1항 ⇒ 제6조제1호	제121조의2 제4항제1호및2호	제78조의3 제1항제2호	5년(100/100), 2년(50/100)	15년(100/100) ⇒ 10년(100/100), 5년(50/100)
안)제6조2항 ⇒ 제6조제2호	제121조의2 제5항제2호및3호	제78조의3 제2항제2호	5년(100/100), 2년(50/100)	15년(100/100) ⇒ 10년(100/100), 5년(50/100)
안)제6조3항 ⇒ 제6조제3호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및나목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3년(50/100), 2년(30/100)	10년(50/100) ⇒ 7년(50/100), 3년(30/100)
안)제6조4항 ⇒ 제6조제3호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및다목	제78조의3 제3항제2호나목	3년(50/100), 2년(30/100)	10년(50/100) ⇒ 7년(50/100), 3년(30/100)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의거 조례 위임사항 신설 (안 제8조)

: 필수조례 정비 추진 사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하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률은 100분의50으로 한다.

⇒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법 제177조로 변경 (안 제12조)

-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5항 부동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으로 변경

○ 현행조례 제14조 단서조항 중 “제8조” ⇒ “제9조” 로 변경 (안 제15조)

- 조례 개정안)제8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

- 「지방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78조의3, 제17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0. 9. 28 ~ 20. 10. 19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세정과 - 17758 (2020. 9. 9))

⇒ 심의위원 전원 적정함을 심의함.

10. 기타 참고사항

○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 기획예산과-1261 (2020.2.6.)

11.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을 “법 제177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중전의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8조제6항-----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의 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 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신 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 · 제9조 (생략)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3장 보칙	<삭제>
<신설>	제3장 보칙
제10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조-----
제12조 · 제13조 (생략)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제15조 ~ 제17조 (생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 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삭제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붙임 2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확 결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 포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 결정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0. 9. 7 ~ 9. 8

나. 방 식 : 서면심의(방문설명)

다. 방문대상 : 지방세심의위원 10명

2. 심의 안건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결정 심의

3. 심의 결과 : 적정 (10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적정함을 심의함)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 절차 진행

가. 입법 예고 : 2010. 9. 28 ~ 10. 19(21일간)

나. 의회 부의 : 제361회 정례회 (11월예정)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세정 팀장

세정과장

기획관리국장 전일 2020. 9. 8.

협조자

시행 세정과-17758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항로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s://www.mokpo.go.kr/>

전화번호 270-3486

팩스번호 270-3580

/ wjd27@korea.kr

/ 부본공개(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심의안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문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
 -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변경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나열된 조문 정비 (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으로 변경
 - 상위법 중복나열된 문구 ⇒ 간결하게 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위임사항 신설 (안 제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강감률: 100분의50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법 제177조로 변경 (안 제12조)
- 현행조례 제14조 단서조항 중 “제8조” ⇒ “제9조”로 변경 (안 제15조)

2020. 9.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건		비 고
				적정	부적정	
위 원 장	변 호 사	조 용 안	조용안	○		
부위원장	기획관리국장	김 규 응	김규응	○		
위 원	세 정 과 장	문 성 철	문성철	○		
"	민원봉사실장	나 승 엽	나승엽	○		
"	도시계획과장	오 병 주	오병주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	변 호 사	조 새 미	조새미	○		
"	세 무 사	김 종 걸	김종걸	○		
"	공인회계사	최 정 미	최정미	○		
"	목포대학교수	김 기 범	김기범	○		
"	법 무 사	정 영 희	정영희	○		

붙임 3

관련 공문



"문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 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 대상 법령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64(2020. 2. 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 대상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정부합동평가 평가기준일('20. 12. 31.)까지 반드시 조례를 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 대상 법령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매뉴얼, 끝.

목 포 시 장

수신자 ☞노, ☞트

주무관

법무혁신팀장

기획예산과장 전일 2020. 2. 6.

참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261

(2020. 2. 6.)

접수 세정과-2066

(2020. 2. 7.)

주 68813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로 203 (용담동)

/ <https://www.mokpo.go.kr/>

전화번호 061-270-3228

팩스번호 061-270-3578

/ hsy46@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해요! 목포사랑운동! (친절·질서·정열·나눔)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 대상 법령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 례제도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2020 01-15	2020 01-15	(제75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 시, 군, 구	세정과
행정 안전부 (지방세 특례 제도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2020 01-15	2020 01-15	(제75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 시, 군, 구	세정과

붙임 4**현행 조례****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
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
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
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2012. 3. 30 조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 칙 <2014·5·12 조28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별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6.7 조3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6.5 조3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8.5.8. 조3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247호, 2019. 4. 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278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0-148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정비협조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사항 해소하고 반환규정을 정확히 하고자함
- 같은 조례 제12조(사용료) 관련 [별표3] 중 현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 연습사용료 무상을 통한 생활체육 시설 사용 보편화 추구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로 반환 규정 명시(안 제17조제1항)

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별표3] 일부 개정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삭제
- 목포시공도장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삭제

3.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0. 9. 28. ~ 10. 19.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체육시설관리과(목포시 대양로 286, 58608)

- ☎ 061-270-4092 / Fax 061-270-8302 / 이메일 mhpark2@korea.kr

7.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중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란과 목포시 궁도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31>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2. 사용일 전일부터 6전일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반환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 우천 등 기타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시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 반환

②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금액 반환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 2020 - 1489 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안 권고 등에 따라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 마련 (안 제7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 마련
- 「국가 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 일괄 정비 (안 제8조)
 -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산재되어 일괄하여 명시

3. 개정 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관련법령 및 관련안 : 붙임3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제1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 (제2018-245)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20. 9. 28. ~ 10. 19. (21일간 예정)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2.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노인장애인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나. 참고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붙임1 개정 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봉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봉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제3항 중 “**공설묘지에 합동매장할**”을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여 그 시설이 반납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사 용 료(원)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신안군· 함평군·영암군· 강진군·장흥군 거주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화 장 장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90,000	495,000		550,000	
	소인(만 14세 이하) "	40,000	180,000		200,000	
	사산아 "	30,000	40,000		40,000	
	개장유골 "	40,000	유연고 150,000	무연고 70,000	유연고 150,000	무연고 70,000
봉 안 당	15년 사용 1기당	100,000	150,000		150,000	
	10년 사용 1기당	70,000	105,000		105,000	
유택동산	영구 1구당	10,000	10,000		10,000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구분	감면내용	감면액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 액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table><tr><th>법 률 명</th><th>적 용 대 상</th></tr><tr><td>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td><td>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td></tr><tr><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td><td>순국선열, 애국지사</td></tr><tr><td>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td><td>중·장기복무 제대군인</td></tr><tr><td>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td><td>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td></tr><tr><td>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td><td>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td></tr><tr><td>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td><td>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td></tr><tr><td>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td><td>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td></tr><tr><td>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td><td>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td></tr></table>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전 액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30%																			
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50%																			
5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전 액																			
6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 액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4항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6년	45%	11년초과~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7년	40%	12년초과~13년	10%
1년초과~2년	65%	7년초과~8년	35%	13년초과~14년	5%
2년초과~3년	60%	8년초과~9년	30%	14년초과~15년	2%
3년초과~4년	55%	9년초과~10년	25%		
4년초과~5년	50%	10년초과~11년	20%		

〔별지 1호 서식〕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신 청 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계	
안치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
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사용) 승인증

봉안시설	명 칭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번호	
	주 소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안치일자	
사 망 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신 청 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계	
안치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족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① ----- ----- 하 며, 봉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 식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② ----- ----- -- 하며, 봉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 지 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 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 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 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 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	<삭제>

생·공헌자

4. ~ 7. (생 략)

② (생 략)

제12조(불안유골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매장할 수 있다.

제13조(개장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유골을 인도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불안유골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

제13조(개장승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사 용 료(원)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신안군· 함평군·영암군· 강진군·장흥군 거주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화 장 장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90,000	495,000	550,000	
	소인(만 14세 이하) "	40,000	180,000	200,000	
	사신아 "	30,000	40,000	40,000	
	개장유골 "	40,000	유연고	무연고	유연고
			150,000	70,000	150,000
봉 안 당	15년 사용 1기당	100,000	150,000	150,000	
	10년 사용 1기당	70,000	105,000	105,000	
유택동산	영구 1구당	10,000	10,000	10,000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사 용 료(원)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신안군· 함평군·영암군· 강진군·장흥군 거주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화 장 장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90,000	495,000	550,000	
	소인(만 14세 이하) "	40,000	180,000	200,000	
	사신아 "	30,000	40,000	40,000	
	개장유골 "	40,000	유연고	무연고	유연고
			150,000	70,000	150,000
봉 안 당	15년 사용 1기당	100,000	150,000	150,000	
	10년 사용 1기당	70,000	105,000	105,000	
유택동산	영구 1구당	10,000	10,000	10,000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구분	감면내용	감면액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 액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 액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전 액	
4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30%	
5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50%	
6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전 액	
7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 액	

〔별표 2〕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구분	감면내용	감면액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 액	
2	<삭 제>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전 액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입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입무부상자, 특수입무공로자	
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30%	
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50%	
5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전 액	
6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 액	

〔별표 3〕

<신 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4항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 ~6년	45%	11년초과 ~12년	15%
6개월초과 ~1년	70%	6년초과 ~7년	40%	12년초과 ~13년	12%
1년초과 ~2년	65%	7년초과 ~8년	35%	13년초과 ~14년	10%
2년초과 ~3년	60%	8년초과 ~9년	30%	14년초과 ~15년	5%
3년초과 ~4년	55%	9년초과 ~10년	25%	15년초과	2%
4년초과 ~5년	50%	10년초과 ~11년	20%		

붙임3**관련법령 및 관련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목포시 공고 제 2020 - 1495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2항 :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안 제17조제4항 :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별표 5 및 조문 신설

3. 관계법령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18.12.)
- 관계부처합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4.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5.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8. ~ 2020. 10. 19.(21일간)

7.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4층 자원순환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061-270-8574, FAX 27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을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이하 “RFID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보관시설·전용용기 또는
RFID시설이 별표5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별지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방식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기 준
설치장소	단지 내 위생 및 미관을 해치지 않고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설치장비 및 물품	- RFID 기기(개별계량장비) - RFID 카드(세대 당 2매 이상) - 개별잠금장치(전용수거용기 당 1개 이상) -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20 리터 전용수거용기
설치수량	RFID 기기는 60~80세대 당 1식 설치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는 RFID 기기 1식 당 1개 이상 설치)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RFID 방식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기준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부서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u>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u>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 ----- ----- -----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이하 “RFID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보관시설·전용용기 또는 RFID시설이 별표5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0-1496호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용당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114필지, 20,286.1㎡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0. 9. 28. ~ 10. 12.(14일 이상)
6. 공람장소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8118, 3669, 3417)

붙 임 : 지적확정조서 1부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용당1지구 지적확정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 증감 (m ²)	소유자		비고
	시·군·구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합 계		125		20,574.4	114		20,286.1	-288.3			
1	목포시	용당동	960	도로	1351.0	960	도로	1221.9	-129.1	목포시		
2	목포시	용당동	960-25	대	125.0	960-25	대	125.0	0.0	최*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104번길 *	
3	목포시	용당동	1112-6	대	110.1	1112-6	대	132.0	-1.1	이*옥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합병
4	목포시	용당동	960-48	대	23.0							합병 후 말소
5	목포시	용당동	960-250	대	132.0	960-250	대	132.0	0.0	기*웅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6	목포시	용당동	960-251	대	145.0	960-251	대	132.5	-12.5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	
7	목포시	용당동	960-252	대	142.0	960-252	대	133.7	-8.3	김*철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	
8	목포시	용당동	960-253	대	136.0	960-253	대	128.0	-8.0	박*웅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	목포시	용당동	960-254	대	121.0	960-254	대	117.4	-3.6	채*목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10	목포시	용당동	960-255	대	142.0	960-255	대	130.6	-11.4	전*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454번길 *	
11	목포시	용당동	960-256	대	142.0	960-256	대	132.8	-9.2	김*나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12	목포시	용당동	960-257	대	132.0	960-257	대	132.0	0.0	강*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6번길 *	
13	목포시	용당동	960-258	대	132.0	960-258	대	129.9	-2.1	이*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14	목포시	용당동	960-259	대	142.0	960-259	대	129.1	-12.9	박*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216번길 *	
15	목포시	용당동	960-260	대	139.0	960-260	대	131.5	-7.5	박*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16	목포시	용당동	960-261	대	145.0	960-261	대	127.8	-17.2	이*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	
17	목포시	용당동	960-262	대	129.0	960-262	대	120.4	-8.6	장*영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18	목포시	용당동	960-263	대	139.0	960-263	대	131.0	-8.0	서*덕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19	목포시	용당동	960-264	대	142.0	960-264	대	131.3	-10.7	고*일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	
20	목포시	용당동	960-265	대	116.0	960-265	대	116.0	0.0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21	목포시	용당동	960-297	도로	10.0	960-297	도로	10.0	0.0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 *	
22	목포시	용당동	960-298	도로	10.0	960-298	도로	10.0	0.0	박*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	
23	목포시	용당동	960-299	도로	10.0	960-299	도로	10.0	0.0	고*봉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24	목포시	용당동	960-300	도로	10.0	960-300	도로	10.0	0.0	문*열	전라남도 목포시 용두로14번길 *	

25	목포시	용당동	960-301	도로	10.0	960-301	도로	10.0	0.0	박*웅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26	목포시	용당동	960-302	도로	10.0	960-302	도로	5.9	-4.1	채*묵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27	목포시	용당동	960-303	대	134.0	960-303	대	129.1	-4.9	김*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28	목포시	용당동	960-309	대	136.0	960-309	대	131.1	-4.9	권*범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27번길 *	
29	목포시	용당동	960-310	대	143.0	960-310	대	137.6	-5.4	김*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	
30	목포시	용당동	960-311	대	159.0	960-311	대	151.4	-7.6	노*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31	목포시	용당동	960-312	대	150.0	960-312	대	143.5	-6.5	정*여 외 1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	
32	목포시	용당동	960-313	대	175.0	960-313	대	170.0	-5.0	이*화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	
33	목포시	용당동	1112-7	대	91.6	1112-7	대	153.3	-7.3	김*식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영해로 *	합병
34	목포시	용당동	960-314	대	69.0							합병 후 말소
35	목포시	용당동	960-317	대	120.0	960-317	대	114.1	-5.9	문*광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36	목포시	용당동	960-318	대	172.0	960-318	대	160.7	-11.3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37	목포시	용당동	960-319	대	162.0	960-319	대	148.5	-13.5	정*영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	
38	목포시	용당동	960-322	대	112.0	960-322	대	116.8	4.8	박*숙	광주 북구 동운로 *	
39	목포시	용당동	960-323	대	161.0	960-323	대	162.1	1.1	이*호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염산1길 *	
40	목포시	용당동	960-324	대	102.0	960-324	대	99.3	-2.7	김*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41	목포시	용당동	960-326	대	128.0	960-326	대	151.7	-6.3	이*만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한들길 *	합병
42	목포시	용당동	1112-3	대	30.0							합병 후 말소
43	목포시	용당동	1112-9	대	129.3	1112-9	대	133.2	-5.1	김*관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	합병
44	목포시	용당동	960-327	대	9.0							합병 후 말소
45	목포시	용당동	960-355	도로	11.0	960-355	도로	6.4	-4.6	채*묵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46	목포시	용당동	1111-1	대	122.6	1111-1	대	122.6	0.0	박*일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	
47	목포시	용당동	1111-5	대	126.0	1111-5	대	126.0	0.0	박*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48	목포시	용당동	1111-6	대	126.0	1111-6	대	124.8	-1.2	나*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49	목포시	용당동	1111-7	대	87.9	1111-7	대	102.3	0.0	강*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길 *	합병
50	목포시	용당동	1111-19	대	14.4							합병 후 말소
51	목포시	용당동	1111-8	대	88.4	1111-8	대	84.6	-3.8	오*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52	목포시	용당동	1111-9	대	149.4	1111-9	대	149.4	0.0	정*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53	목포시	용당동	1111-10	대	149.4	1111-10	대	147.2	-2.2	최*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54	목포시	용당동	1111-11	대	132.6	1111-11	대	132.6	0.0	윤*심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55	목포시	용당동	1111-12	대	129.3	1111-12	대	134.4	5.1	윤*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658번길 *	
56	목포시	용당동	1111-13	대	119.3	1111-13	대	119.3	0.0	박*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57	목포시	용당동	1111-14	대	169.3	1111-14	대	169.3	0.0	정*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로 *	
58	목포시	용당동	1111-15	대	129.3	1111-15	대	130.6	1.3	강*경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59	목포시	용당동	1111-16	대	126.0	1111-16	대	126.0	0.0	정*상	전라남도목포시백년 대로73번길	
60	목포시	용당동	1111-17	대	126.0	1111-17	대	126.0	0.0	이*심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61	목포시	용당동	1111-18	대	21.5	1111-18	대	21.5	0.0	오*순 외 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52번길 *	
62	목포시	용당동	1112-1	대	179.5	1112-1	대	188.8	9.3	이*임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63	목포시	용당동	1112-4	대	133.6	1112-4	대	133.6	0.0	최*용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64	목포시	용당동	1112-5	대	148.8	1112-5	대	148.8	0.0	최*용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95번길 *	
65	목포시	용당동	1112-8	대	162.4	1112-8	대	152.9	-9.5	이*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	
66	목포시	용당동	1112-10	대	183.4	1112-10	대	184.9	1.5	심*구	전라남도목포시용해 로59번길 *	
67	목포시	용당동	1114	대	162.3	1114	대	162.7	0.4	나*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	
68	목포시	용당동	1114-1	대	121.6	1114-1	대	164.6	2.0	주*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산두길 *	합병
69	목포시	용당동	1140-20	대	41.0							합병 후 말소
70	목포시	용당동	1140-10	대	111.7	1140-10	대	197.0	-1.9	정*수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합병
71	목포시	용당동	1114-2	대	87.2							합병 후 말소
72	목포시	용당동	1140-33	대	171.9	1140-33	대	197.4	2.9	이*치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합병
73	목포시	용당동	1114-3	대	22.6							합병 후 말소
74	목포시	용당동	1115-1	대	285.9	1115-1	대	283.3	-2.6	안*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	
75	목포시	용당동	1115-2	대	573.9	1115-2	대	574.9	1.0	안*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	
76	목포시	용당동	1115-3	대	210.8	1115-3	대	204.3	-6.5	박*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77	목포시	용당동	1115-4	대	165.6	1115-4	대	167.8	2.2	김*기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78	목포시	용당동	1115-5	대	189.4	1115-5	대	189.4	0.0	남*성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로4길 *	
79	목포시	용당동	1115-6	대	162.0	1115-6	대	159.3	-2.7	최*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80	목포시	용당동	1115-7	대	114.2	1115-7	대	111.6	-2.6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81	목포시	용당동	1115-9	대	126.5	1115-9	대	123.8	-2.7	전*용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82	목포시	용당동	1115-10	대	96.4	1115-10	대	88.4	-8.0	정*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28번길 *	

83	목포시	용당동	1115-11	대	126.5	1115-11	대	134.1	7.6	박*수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	
84	목포시	용당동	1115-12	대	98.9	1115-12	대	100.5	1.6	안*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	
85	목포시	용당동	1118	도로	1019.6	1118	도로	1090.6	71.0	국토 교통부		
86	목포시	용당동	1121	도로	1629.6	1121	도로	1718.6	89.0	목포시		
87	목포시	용당동	1168	도로	227.0	1168	도로	248.8	2.6	목포시		합병
88	목포시	용당동	1122	도로	19.2							합병 후 말소
89	목포시	용당동	1140-1	대	99.8	1140-1	대	98.8	-1.0	김*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0	목포시	용당동	1140-2	대	169.4	1140-2	대	168.0	-1.4	양*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1	목포시	용당동	1140-3	대	167.1	1140-3	대	170.7	3.6	진*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2	목포시	용당동	1140-4	대	162.4	1140-4	대	154.2	-8.2	임*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묘동길 *	
93	목포시	용당동	1140-5	대	165.3	1140-5	대	155.6	-9.7	김*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4	목포시	용당동	1140-6	대	170.9	1140-6	대	174.6	3.7	정*자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95	목포시	용당동	1140-7	도로	44.0	1140-7	도로	44.0	0.0	문*복 외 3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6	목포시	용당동	1140-8	대	160.3	1140-8	대	166.7	6.4	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5길 *	
97	목포시	용당동	1140-9	대	182.2	1140-9	대	179.2	-3.0	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98	목포시	용당동	1140-11	대	193.3	1140-11	대	193.3	0.0	김*자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	
99	목포시	용당동	1140-12	대	146.7	1140-12	대	146.7	0.0	위*현 외 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00	목포시	용당동	1140-13	대	161.8	1140-13	대	153.1	-8.7	조*용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55번길 *	
101	목포시	용당동	1140-14	대	158.2	1140-14	대	146.9	-11.3	조*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 *	
102	목포시	용당동	1140-15	대	154.8	1140-15	대	159.7	4.9	이*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03	목포시	용당동	1140-16	도로	40.2	1140-16	도로	40.2	0.0	문*복 외 3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104	목포시	용당동	1140-19	대	3.6	1140-19	대	3.6	0.0	문*복 외 3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105	목포시	용당동	1140-22	대	153.8	1140-22	대	153.8	0.0	문*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	
106	목포시	용당동	1140-23	대	132.3	1140-23	대	132.3	0.0	정*선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18번길 *	
107	목포시	용당동	1140-24	대	142.1	1140-24	대	142.1	0.0	나*숙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	
108	목포시	용당동	1140-25	대	176.2	1140-25	대	176.2	0.0	채*석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109	목포시	용당동	1140-26	도로	47.2	1140-26	도로	43.3	-3.9	목포시		
110	목포시	용당동	1140-27	대	160.9	1140-27	대	160.9	0.0	이*단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11	목포시	용당동	1140-28	대	154.4	1140-28	대	156.5	2.1	정*자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12	목포시	용당동	1140-29	대	148.6	1140-29	대	154.4	5.8	김*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13	목포시	용당동	1140-30	대	152.3	1140-30	대	158.6	6.3	김*신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34번길 *	
114	목포시	용당동	1140-31	대	132.5	1140-31	대	133.5	1.0	김*숙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	
115	목포시	용당동	1141-1	대	82.2	1141-1	대	91.2	9.0	강*금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116	목포시	용당동	1141-2	대	101.3	1141-2	대	101.3	0.0	추*용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	
117	목포시	용당동	1141-3	대	229.3	1141-3	대	229.3	0.0	황*식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52번길 *	
118	목포시	용당동	1141-4	대	196.2	1141-4	대	195.2	-1.0	박*아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59번길 *	
119	목포시	용당동	1141-5	대	332.8	1141-5	대	502.2	-12.4	사복지법 인홍*인간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국민로 *	합병
120	목포시	용당동	1141-6	대	181.8							합병 후 말소
121	목포시	용당동	1141-7	대	98.4	1141-7	대	99.4	1.0	사복지법 인홍*인간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국민로 *	
122	목포시	용당동	1164	도로	505.6	1164	도로	553.5	47.9	목포시		
123	목포시	용당동	1165	도로	500.6	1165	도로	436.4	-73.8	목포시		합병
124	목포시	용당동	1166-1	도로	9.6							합병 후 말소
125	목포시	용당동	1166	도로	328.4	1166	도로	268.4	-60.0	목포시		

입 법 예 고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제 입증책임제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

3. 주요내용

가.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 기존규제를 존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기존규제의 심사 규정 신설(안 제4조)

-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경우 등에 기존 규제 심사 가능
- 소관부서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안 제5조제4항)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 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개정 조례(안) : 별첨

7.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8. ~ 2020.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425, FAX 270-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

[별지 제1호 서식] <신 설>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목포시 훈령-00호) 등	
소관 부서	과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u> <u>목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u>
<u><신 설></u>	<u>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u>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u> <u>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u> <u>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u> <u>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u>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⑤·⑥ (생략)

제4조 ~ 제8조 (생략)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준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준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